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기부금품법 적용 배제〉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6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호중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9.
3. 회부연월일 : 2025. 12.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서(안 제3조제12호 신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전제¹⁾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감독·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절차·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u><신설></u>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59호)가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

현행법은 자선사업, 구휼사업, 국제적 구제사업,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시민참여나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²⁾

한편,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상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인데,³⁾ 현행법령상 공익법인은 법률에 따라 그 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음.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5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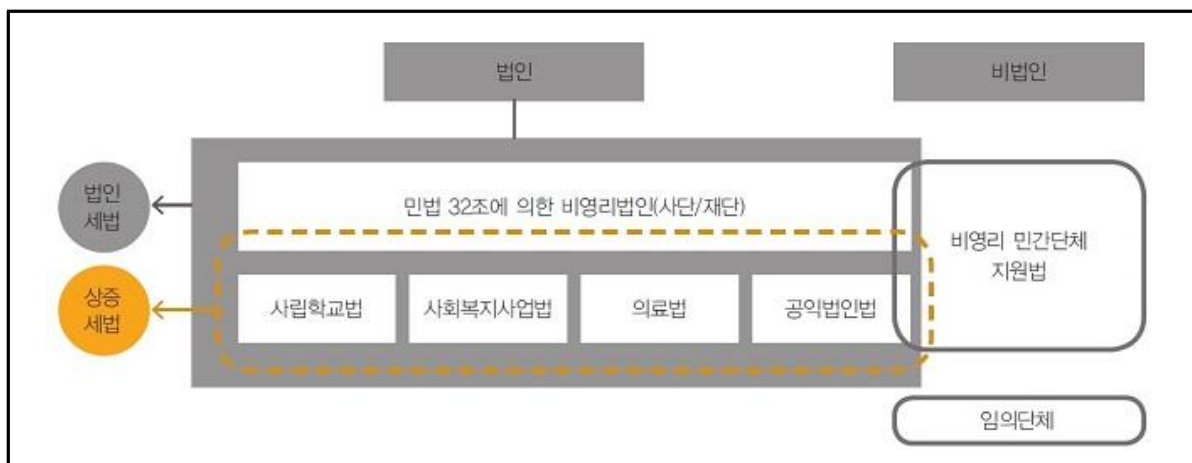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인”이란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다. (생략)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⁴⁾(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인데,

공익사업의 목적이 ‘학자금·장학금·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⁵⁾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법인 유형⁶⁾]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외에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하며 등록된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기부금품에

4)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57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전제로 하여 발의된 법률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59호)이 함께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

5) 반면, 함께 발의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57호)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6) 장윤주·이영주·전현경,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 분석」, 아름다운재단, 2018.

대하여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등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 등은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⁷⁾

[공익법인 기부 관련 관리 체계⁸⁾]

구 분		소관부처	주 요 내 용
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경제부 (국세청)	○ 등록된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공익법인에 대한 다양한 의무 부여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 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제출 및 공시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보관 의무 등
	법인세법		○ 지정·고시한 공익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 기부금 사용 등에 대한 의무 부과 -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소득세법		
기부금품법		행정안전부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의 모집행위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 위반시 형사처벌

그런데 각종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접수한 금품에 대하여 각종 조세법률과 「기부금품법」이 개별적으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중첩적이라는 지적이 있고,⁹⁾

7) 이송림·한경석, 「기부금품 모집 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NARS 입법·정책보고서, Vol.71, 국회입법조사처, 2020.

8) 정순문, 「비영리단체 관리체계와 공시제도」, 2020 공익법인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바탕으로 제작성

「기부금품법」은 공익법인이 각종 조세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
· 고시된 것과는 별개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된 기부
금품에 대하여 모집비용 충당비율과 사용용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자율적인 기부금품 모집·사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상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
익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관리 체계를 일
원화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사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중복
적인 규제를 해소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후원금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특성상 회원들로
부터 회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전이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배제¹⁰⁾되
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2020년 검찰은 독거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및 법인 대
표이사가 「기부금품법」상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여 인건비·
홍보비를 지출하고 기부금품 중 일부를 경조사비 등에 지출하여 모집

9) 재단법인 동천, 「[현장스케치] 또 바뀐 기부금품법, 제대로 이해하기 세미나」, 2024,
https://www.bkl.or.kr/bbs/board.php?bo_table=B42&wr_id=85, 2026.01.22. 최종확인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
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
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라. (생략)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법인 및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사건이 있었음.

원심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나 후원회비는 해당 사단법인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전제로 대표이사 및 사단법인에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선고하였으나,¹¹⁾ 대법원은 「기부금품법」 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후원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지 논란이 된 바 있음.^{12) 13)}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사용용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 방법·주체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법에 대한 적용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대구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1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13) 이에 2024년 「기부금품법」 개정을 통해 현재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가입금이나 회비 등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일부]

제 정 안

제25조(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 ① 공익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모집(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홈페이지 및 모집장소에 게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3. 모집금품의 사용방법(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의 사용 비율을 포함한다) 및 사용기간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계좌 정보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전항의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이 이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제4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익법인의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함께 제출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57호)은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의 수립과 계획·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모집금품의 사용방법·기간이나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현행 「기부금품법」에 비하여 공익법인이 기부금품 모집·접수·사용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음.

또한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은 정치후원금이나 크리스마스철 모금, 공동모금, 국민신탁 등과 같이 특수한 모집방법을 거치거나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¹⁴⁾

공익사업과 기부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 연대·발전이라는 취지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

14) 현행법령 상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적용배제 법률	내 용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기부 - 개인 또는 후원회 모금, 실명, 방법(수표,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 지출 제한
결핵예방법	크리스마스철 모금
보훈기금법	보훈기금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의 모집기관 지정(88골프장)
문화예술진흥법	공연장 등 입장료(폐지), 전문예술단체·법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제교류기금 설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치, 공동모금 사업
재해구호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연금품 모집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국민신탁단체에 기부·증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 기부 - 물류체계 구축, 취식 후 피해발생시 면책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답례품 한도 제한

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 보호 목적의 기부강요 금지 등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350